

# 2019

## 판매직 종사 노동자 (소매업 · 음식점)

# 노동실태





# CONTENTS

<b>Chapter 01</b>	<b>실태조사 개요 및 목적</b>	<b>01</b>
	🍃 조사 목적	03
	🍃 조사 대상	05
	🍃 조사내용	05
	🍃 조사방법	06
<b>Chapter 02</b>	<b>임금 등 노동조건</b>	<b>07</b>
	🍃 일반 현황	09
	🍃 임금	12
	🍃 노동시간	15
	🍃 휴가	18
	🍃 사회보험	20
<b>Chapter 03</b>	<b>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교</b>	<b>23</b>
	🍃 비정규직 규모	25
	🍃 노동조건 비교	25
<b>Chapter 04</b>	<b>최저임금에 대한 인식</b>	<b>29</b>
	🍃 올해 최저임금 평가	31
	🍃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34
<b>Chapter 05</b>	<b>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b>	<b>37</b>
	🍃 법정 근로조건 준수 조치 필요	39
	🍃 영세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	40



# Chapter 01

.

## 실태조사 개요 및 보고서 목적



# 실태조사 개요 및 목적

## 1) 조사 목적

-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 가장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도 볼 수 있는 소매업과 음식점업 종사자들의 일반적인 노동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아가 이를 기초로 수원시 노동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2018년 상반기 기준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각 55,144명(11.2%), 30,335명(6.2%)으로 수원시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에 이룸.

〈표 1〉 2018년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산업별 현황

산업명	2018년	
	인원수(명)	비율(%)
농림어업	0	0.0
제조업	108,752	22.1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1,783	0.4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2,854	0.6
건설업	36,745	7.5
도소매업	55,144	11.2
운수및창고업	17,665	3.6
숙박및음식점업	30,335	6.2
정보통신업	19,780	4.0
금융보험업	11,239	2.3
부동산업	11,861	2.4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36,642	7.4
사업시설관리및지원,임대서비스	32,484	6.6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21,666	4.4
교육서비스업	37,674	7.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2,386	8.6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8,934	1.8
협회,단체,수리,기타서비스업	14,151	2.9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2,468	0.5
<b>합계</b>	<b>492,566</b>	<b>100.0</b>

※ 출처 :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2018 수원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2018 (통계청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 ● 2019 판매직 종사 노동자(소매업 · 음식점업) 노동실태

-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타산업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수원시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월 290.3만 원인데 비해 도소매업 노동자의 임금은 226.8만 원(전산업 대비 78.1%)이고, 음식숙박업 노동자의 임금은 154.0만 원(전산업 대비 53.0%)에 불과함.
  - 가장 임금수준이 높은 제조업 종사 노동자의 임금(363.8만 원/월)에 비해서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임금은 각 62.3% 및 42.3%에 불과함.
  - 특히, 두 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타 산업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과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업을 제외하고 타산업에 비해 가장 임금수준이 낮음.

〈표 2〉 2018년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산업별-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산업	고용형태	금액(만 원)	산업	고용형태	금액(만 원)
농림어업	정규직		부동산업	정규직	263.5
	비정규직			비정규직	209.0
	합계			합계	240.7
제조업	정규직	373.1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정규직	449.8
	비정규직	283.5		비정규직	336.6
	합계	363.8		합계	441.2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정규직	327.6	사업시설관리및지원 임대서비스	정규직	229.7
	비정규직			비정규직	182.7
	합계	327.6		합계	206.8
수도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정규직	354.6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정규직	376.1
	비정규직			비정규직	181.5
	합계	354.6		합계	343.0
건설업	정규직	337.2	교육서비스업	정규직	380.0
	비정규직	218.9		비정규직	176.9
	합계	270.7		합계	296.5
도소매업	정규직	278.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정규직	259.6
	비정규직	160.6		비정규직	135.2
	합계	226.8		합계	223.0
운수및창고업	정규직	290.1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정규직	209.3
	비정규직	221.8		비정규직	186.0
	합계	280.4		합계	194.3
숙박및음식점업	정규직	212.3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정규직	240.7
	비정규직	124.5		비정규직	131.7
	합계	154.0		합계	186.2
정보통신업	정규직	387.5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정규직	
	비정규직	219.4		비정규직	116.1
	합계	367.3		합계	116.1
금융보험업	정규직	457.8	전체	정규직	340.3
	비정규직	262.0		비정규직	183.8
	합계	357.4		합계	290.3

※ 출처 : 위와 동일

- 두 업종의 비정규직 비율도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편.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32.0%인데 반해 도소매업은 44.0%, 음식숙박업은 66.3%로 각 1.38배, 2.07배 높음.

〈표 3〉 2018년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산업명	노동자수	비정규직 비율
농림어업		
제조업	108,753	10.3%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1,783	0.0%
수도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2,854	0.0%
건설업	36,745	56.2%
도소매업	55,144	44.0%
운수및창고업	17,665	14.3%
숙박및음식점업	30,335	66.3%
정보통신업	19,781	12.0%
금융보험업	11,239	51.3%
부동산업	11,861	41.8%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36,643	7.6%
사업시설관리및지원,임대서비스업	32,484	48.7%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21,666	17.0%
교육서비스업	37,674	41.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2,386	29.4%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8,934	64.5%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14,151	50.0%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2,468	100.0%
합계	492,566	32.0%

※ 출처 : 위와 동일

## 2) 조사 대상

- 소매업으로는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옷가게, 화장품가게, 기타소매점으로 정하고, 거기서 일하는 판매직 노동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음. 음식점업으로는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술집, 빵집, 카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는 판매직 노동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음.
- 전체 조사대상 333명 중 종사업종을 밝히지 않은 2명을 제외하고 소매업 종사자는 193명(58.3%)이고, 음식업 종사자는 138명(41.7%)임.

## 3) 조사내용

- 조사내용은 크게 현 직장에서의 노동조건,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인적사항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4〉 조사내용

주제	조사내용
노동조건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수)
	입사일
	고용형태(상용, 임시, 일용) 및 고용계약기간
	노동시간
	타직장 취업여부 및 취업의사
	작년 대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의 변화
	임금 구성항목 및 총임금액(정액급여, 초과급여)
	임금 지급 기준(시간급, 일급, 월급, 인센티브)
	주휴수당 지급 여부
	인센티브 지급 여부 및 금액
	휴가사용 여부(연차, 생리, 출산전후, 육아, 가족돌봄, 경조)
	사회보험 가입 여부
최저임금	취업 업종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에 미친 영향과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유
	올해 최저임금 인상 적정성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생활향상에 미친 영향
	올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
인적사항	내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
	성별
	학력
	연령대

#### 4) 조사방법

- 본 조사는 2019년 4월 초순부터 2019년 6월 초순까지 약 2개월간 소매업 및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상점을 무작위로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의 내용을 피설문자에게 질의하며 설문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다만, 피설문자의 사정상 즉시 응답이 어려울 경우 피설문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후 수거함.
- 분석은 윈도우즈용 SPSS 21.0을 사용하였고,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함.
  - 보조 분석자료로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의 원자료를 받아 지역별로는 수원시(거주지 기준), 산업별로는 소매업 및 음식점업, 종사상 지위로는 임금노동자(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제외), 직업별로는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및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추출하여 본 설문조사의 내용과 비교분석함.

## Chapter 02

.

# 임금 등 노동조건



# 임금 등 노동조건

## 1) 일반 현황

### (1)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 응답자 중 남성은 26.3%, 여성은 73.7%를 차지해 소매업·음식점업에는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이하 ‘지역별고용조사’)의 결과도 본 조사와 유사하게 나타남.

•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이하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산업별로는 소매업 및 음식점업에 해당하고, 직업별로는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및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자를 본 조사와 비교분석함.

• 본 조사는 소매업 및 음식점업에서 고객을 직접 대면하고 서비스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에,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시에도 일정 직군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표 5〉 응답자 성별

성별	본 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남성	82	26.3%	39	24.5%
여성	230	73.7%	120	75.5%
합계	312	100.0%	159	100.0%

- 응답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55.3%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30대~50대가 10%대를 보이고 있음.
- 지역별고용조사에서도 2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본 조사 결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전연령층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지역별고용조사는 가구의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연령대의 편중이 없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20대가 조사대상으로 비교적 접근하기 쉽고, 그들의 응답률도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 2019 판매직 종사 노동자(소매업 · 음식점업) 노동실태

〈표 6〉 응답자 연령대

연령대	본 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0대	12	3.6	11	6.9
20대	183	55.5	40	25.2
30대	34	10.3	26	16.4
40대	48	14.5	33	20.8
50대	42	12.7	39	24.5
60대이상	11	3.3	10	6.3
합계	330	100.0	159	100.0

- 응답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학 재학 중인 노동자의 응답이 46.0%로 가장 높고, 고졸 이하 31.7%, 대학 졸업 이상인 자가 22.3%임.
  - 지역별고용조사에서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가 56.6%로 가장 높았고, 대학 재학 중인 노동자는 20.0%여서 본 조사와 차이를 보임. 이러한 이유도 앞의 연령대에서의 차이와 같이 조사대상의 접근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됨.

〈표 7〉 응답자 학력

학력	본 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고졸이하	91	31.7	90	56.6
대학재학	132	46.0	27	20.0
대학졸업이상	64	22.3	42	26.4
합계	287	100.0	159	100.0

- 노동자가 현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조사일까지의 기간은 평균 16.7개월임. 다만, '3개월 이하'가 32.6%이고, '6개월 이하'가 15.7%로 절반 정도(48.3%)의 노동자들이 6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본래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임. 따라서 본 분석에서처럼 입사일부터 조사일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볼 수는 없으나 대략의 근속기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임.

〈표 8〉 입사일로부터 응답일까지의 평균 근속기간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근속기간	325	0	189	16.70	28.889

〈표 9〉 입사일로부터 응답일까지의 근속기간

항목	빈도	비율	누적 비율
3월 이하	106	32.6	32.6
3월~6월 이하	51	15.7	48.3
6월~1년 이하	56	17.2	65.5
1년~2년 이하	61	18.8	84.3
2년~3년 이하	17	5.2	89.5
3년 초과	34	10.5	100.0
합계	325	100.0	

## (2) 사업장 특성

- 응답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은 소매업이 58.7%이고, 음식점업이 41.3%임.
  - 지역별고용조사에서는 음식점업이 소매업보다 다소 높음.

〈표 10〉 사업의 종류

학력	본 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매업	193	58.7	75	47.2
음식점업	136	41.3	84	52.8
합계	329	100.0	159	100.0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편의점 및 슈퍼마켓이 32.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패스트푸드점 및 음식점과 빵집 및 커피숍이 각각 20.7%를 차지함.

〈표 11〉 사업의 구체적 종류

항목	빈도	비율
편의점, 슈퍼마켓	107	32.5
주유소	10	3.0
패스트푸드, 음식점, 술집	68	20.7
옷가게, 화장품점	45	13.7
빵집, 커피숍, 아이스크림 전문점	68	20.7
기타 소매점	31	9.4
합계	329	100.0

• • 2019 판매직 종사 노동자(소매업 · 음식점업) 노동실태

- 응답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76.4%를 차지하고 있고, 10인 미만 사업장이 18.4%임. 10인 이상 사업장은 4.9%에 불과함.

〈표 12〉 사업장 규모

항목	빈도	비율	누적 비율
1일 평균 종사자수 5인 미만	249	76.4	76.4
1일 평균 종사자수 5인~10인 미만	61	18.7	95.1
1일 평균 종사자수 10인~30인 미만	13	4.0	99.1
1일 평균 종사자수 30인~100인 미만	2	.6	99.7
1일 평균 종사자수 100인~300인 미만	0	.0	100.0
1일 평균 종사자수 300명 이상	1	.3	
합계	326	100.0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중 상당히 중요한 부분(해고의 제한, 근로시간 제한, 연장 · 야간 · 휴일 · 근로수당 지급, 연차휴급휴가 부여 등)을 적용받고 있지 않기에 소매업 · 음식점업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2) 임금

### (1) 임금 형태

- 일하는 시간에 따라 매월 달리 임금을 지급받는 시급제가 73.3%로 가장 높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는 22.8%에 불과하였음.

〈표 13〉 임금 형태

항목	빈도	비율
시간급	241	73.3
일급	11	3.3
월급	75	22.8
인센티브만	2	.6
합계	329	100.0

- 기본급 외에 통상적 수당(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한 고정적 수당)과 기타 수당(통상적 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과 같은 별도의 수당을 받는 노동자는 5.2%에 불과함.
- 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기본급 외에 복리후생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을 알 수 있음.

## (2) 임금 수준

- 노동자들의 한 달 평균 임금은 104.6만 원임.
- 본 조사에서의 임금은 지역별고용조사 분석결과에 비해서 적게 나타났다. 지역별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1월 평균 임금은 155.1만 원으로 본 조사결과에 비해 50.5만 원의 차이를 보임.

〈표 14〉 월 평균 임금

단위: 만 원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본조사	309	10	304	104.6	67.109
지역별고용조사	159	20	400	155.10	74.543

- 본 조사에서는 대학교 재학중인 20대 청년, 소위 ‘알바’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정됨.

## (3) 시간급

- 노동자들의 평균 시간급은 7,797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도 미치지 못함.

〈표 15〉 시간급

단위: 원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시간급	310	643	64,429	7,797.13	5,029.531

### ※ 시간급 계산방법

- 1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경우 지난달 지급받은 임금을 1월 평균 근로시간(1주 평균노동시간×4.32주)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음.
-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지난달 지급받은 임금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노동시간((1주 평균노동시간+(1주 노동시간÷5일))×4.32주)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음.
- 1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지난달 지급받은 임금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노동시간((1주 평균노동시간+8시간)×4.32주)과 연장근로수당 시간분((1주 평균노동시간-40시간)×1.5)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음.
- 월급제 노동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와 달리 1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시간분((1주 평균노동시간-40시간)×1.5)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음.

- 시간급이 최저임금보다 저액인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84.1%로 대부분의 소매업·음식점업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님.

• • 2019 판매직 종사 노동자(소매업·음식점업) 노동실태

〈표 16〉 최저임금 준수 여부

항목	빈도	비율
최저임금 이상	49	15.9
최저임금 미만	260	84.1
합계	309	100.0

- 시간급이 8,000원 이상인 노동자들의 비중도 20.3%에 불과함.

〈표 17〉 시간급 8,000원 이상 지급 여부

항목	빈도	비율
시간급 8,000원 이상	63	20.3
시간급 8,000원 미만	247	79.7
합계	310	100.0

- 최저임금 미달률이 이처럼 높은 것은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임.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1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하는데,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시급제, 일급제) 중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27.0%에 불과하였음. 월급제 노동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표 18〉 시간 이상 노동자(시급, 일급) 주휴수당 지급 여부

항목	빈도	비율
주휴수당 지급	40	27.0
주휴수당 비지급	108	73.0
합계	229	100.0

-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시간급이 8,350원(78.9%)인데, 이 중 73.0%가 주휴수당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임.

〈표 19〉 시간급 구분

항목	빈도	비율
시급 8,350원 미만	7	3.0
시급 8,350원	187	78.9
시급 8,350원 초과	43	18.1
합계	237	100.0

- 최저임금 미달의 두 번째 이유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 외에 소위 ‘공짜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임.
  - 월급제이고 1주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시급이 7,057원에 불과함.

〈표 20〉 월급제 노동자 평균 임금 및 평균 노동시간

단위: 원, 시간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임금	52	1,400,000	3,000,000	2,004,272.69	386,445.517
노동시간	54	40	72	51.65	11.327

## ※ 1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월급제 노동자의 시간급 계산법

- 월급제이고 1주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인 노동자들의 1주 평균 노동시간이 51.6시간이고, 평균 임금은 2,004,272원임
- 40시간을 초과하는 11.6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분 근로시간은 74.82시간 ( $11.6 \times 1.5 \times 4.32$ 주)이됨. 여기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더하면 임금지급을 위한 1월 노동시간은 284시간임
- 1월 노동시간이 284시간인 경우 2019년 최저임금 8,350원/h를 기준으로 1월 최저임금은 2,371,400원이 됨( $284 \times 8,350$ 원). 결국 1월 평균 최저임금보다 367,128원을 적게 지급받은 것임.
- 시급은 7,057원( $2,004,272 \div 284$ 시간)으로 2019년 최저임금액(8,350원)보다 1,293원이 적음.

## 3) 노동시간

## (1) 실제 노동시간

- 1주 평균 노동시간은 28시간임. 노동시간을 초단시간노동 기준(15시간/주), 법정 노동시간 기준(40시간/주)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초단시간(1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28.8%,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노동자 41.2%, 40시간 초과 노동자 30.0%로 나타났음.
  - 일반적인 형태의 노동자보다 노동시간의 편차가 큼. 소매업·판매업 노동자는 단시간의 ‘알바노동’부터 법정 노동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초장시간의 노동까지 비교적 균등하게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 2019 판매직 종사 노동자(소매업·음식점업) 노동실태

〈표 21〉 1주 평균 노동시간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주 노동시간	330	5	72	27.95	16.539

〈표 21〉 1주 평균 노동시간 구분

항목	빈도	비율
1주 15시간 미만	95	28.8
1주 40시간 미만	136	41.2
1주 40시간 이상	99	30.0
합계	330	100.0

(2)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의 변화

-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파악하고자 '2018년 12월에 비해 노동시간이 변했는지'와 '변했다면 얼마나 변했는지'를 물음.
- 노동시간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것이 77.9%, 늘어났다고 응답한 것이 5.7%이고, 줄었다고 응답한 것은 15.4%임.
  -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늘어난 노동시간은 총 132시간(8.25시간×16명)이고 줄어든 노동시간은 204시간(5.67시간×36명)임. 결국 총응답자의 작년 대비 줄어든 노동시간은 72시간이고, 개인당 평균 13분(0.22시간)임을 알 수 있음.
  -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더라도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음.

〈표 22〉 노동시간 변화 여부

항목	빈도	비율
늘어남	19	5.8
줄어듦	51	15.5
변화없음	258	78.7
합계	328	100.0

〈표 23〉 노동시간 변화량

노동시간 변화 형태	수	평균	표준편차
늘어남	8.25	16	8.521
줄어듦	5.67	36	4.592

- 휴게시간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음.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것이 90.3%, '늘어났거나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3.4%, 4.0%임.

〈표 24〉 휴게시간 변화 여부

항목	빈도	비율
늘어남	11	3.4
줄어듦	13	4.0
변화없음	299	92.6
합계	323	100.0

### (3) 겸업 여부 및 의사

- 88.9%의 노동자는 현재의 직장에만 다니고 있었고,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노동자는 11.1%였음.

〈표 25〉 겸업 여부

항목	빈도	비율
일하고 있음	35	11.1
일하고 있지 않음	281	88.9
합계	316	100.0

- 68.1%의 노동자는 현재의 노동시간에 만족하였고, 나머지 31.9%의 노동자는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어 했음.

〈표 26〉 노동시간 · 일 연장의사

항목	빈도	비율
지금일을 늘리고싶음	41	12.7
지금일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싶음	29	9.0
더 많은 일을 하는 직장으로 옮기고 싶음	33	10.2
그대로 있고 싶음	220	68.1
합계	323	100.0

- 노동시간의 길이에 따라 다른 일을 하는지 여부 및 노동시간을 늘리고 싶은지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 직장에서의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현재 직장과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비율이 높았음.
  -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 중 두 가지 일 이상을 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18.7%로 전체 노동자 평균에 비해 높았음.
  - 1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36.8%는 노동시간이 긴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현재 직장에서 노동시간을 늘리고 싶어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 2019 판매직 종사 노동자(소매업 · 음식점업) 노동실태

〈표 27〉 노동시간별 겸업 여부

단위: 수(비율)

	다른 일 하고 있음	다른 일 하고 있지 않음	전체
1주 15시간 미만	17(18.7%)	74(81.3%)	91(100.0%)
1주 40시간 미만	14(10.8%)	116(89.2%)	130(100.0%)
1주 40시간 이상	4(4.2%)	91(95.8%)	95(100.0%)
전체	35(11.1%)	281(88.9%)	316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9.903a	2	.007
우도비	10.352	2	.006
선형 대 선형결합	9.836	1	.002
유효 케이스 수	316		

〈표 28〉 노동시간별 노동시간 · 일 연장의사

단위: 수(비율)

	현재일을 늘리고 싶음	현재일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싶음	더 많은 일을 하는 직장으로 옮기고 싶음	그대로 있고 싶음	전체
1주 15시간 미만	13 (14.0%)	9 (9.7%)	7 (7.5%)	64 (68.8%)	93 (100.0%)
1주 40시간 미만	22 (16.5%)	10 (7.5%)	17 (12.8%)	84 (63.2%)	133 (100.0%)
1주 40시간 이상	6 (6.2%)	10 (10.3%)	9 (9.3%)	72 (74.2%)	97 (100.0%)
전체	41 (12.7%)	29 (9.0%)	33 (10.2%)	220 (68.1%)	323 (100.0%)

- 노동자 중 60~70%의 노동자는 자발적으로 단시간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나머지 30~40%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거나, 이미 다른 직장에서 현재 직장에서 부족한 노동시간을 보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4) 휴가

- 소매업 ·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법정 · 약정 휴가를 사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와 경조휴가 사용률만 10%를 넘었고,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사용률은 1.5%~3.6%에 불과했음.

〈표 28〉 휴가 사용 여부

단위: 수(비율)

휴가사용 여부	연차휴가	생리휴가 (여성)	출산전후 휴가(여성)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	경조휴가
예	39(11.8)	10(4.3)	4(1.7)	6(1.8)	6(1.8)	38(11.5)
아니오	291(87.9)	220(95.7)	226(98.3)	324(98.2)	324(97.9)	292(88.2)
합계	331(100.0)	230(100.0)	230(100.0)	331(100.0)	330(100.0)	331(100.0)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법정 휴가 모두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들의 휴가 사용률도 연차휴가 36.2%, 생리휴가 13.2%, 출산전후휴가 7.9%, 육아휴직 6.9%에 불과함.

〈표 29〉 휴가 사용 여부(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단위: 수(비율)

휴가사용 여부	연차휴가	생리휴가 (여성)	출산전후 휴가(여성)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	경조휴가
예	21(36.2)	5(13.2)	3(7.9)	4(6.9)	2(3.4)	11(19.0)
아니오	37(63.8)	33(86.8)	35(92.1)	54(93.1)	56(96.6)	47(81.0)
합계	58(100.0)	38(100.0)	38(100.0)	58(100.0)	58(100.0)	58(100.0)

- 사업장 규모와 각종 휴가의 사용 여부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차휴가와 육아휴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사업장의 규모가 적을수록 휴가사용률이 낮고, 규모가 클수록 휴가사용률이 높았음.

〈표 30〉 사업장 규모별 휴가 사용 여부

단위: 수(비율)

	연차휴가		육아휴직	
	사용함	사용 못 함	사용함	사용 못 함
4인 이하	17(6.8)	232(93.2)	2(0.8)	247(99.2)
10인 미만	13(21.3)	48(87.7)	2(3.3)	59(96.7)
10인 이상	8(50.0)	8(50.0)	8(98.2)	14(87.5)

	연차휴가			육아휴직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34.004a	2	.000	12.244a	2	.002
우도비	25.276	2	.000	6.888	2	.032
선형 대 선형결합	32.421	1	.000	10.306	1	.001
유효 케이스 수	326			326		

## 5) 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모두 30% 이상으로 나타남.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32.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3.2%, 고용보험 가입자 34.7%로 조사됨.

〈표 31〉 국민연금 가입 상태

항목	빈도	비율
직장가입자	93	32.4
지역가입자	45	15.7
아니오(수급권자 포함)	149	51.9
합계	287	100.0

〈표 32〉 건강보험 가입 상태

항목	빈도	비율
직장가입자	94	33.2
지역가입자	57	20.1
의료수급권자	2	0.7
직장가입 피부양자	39	13.8
아니오	91	32.2
합계	283	100.0

〈표 33〉 고용보험 가입 상태

항목	빈도	비율
예	101	34.7
아니오	160	55.0
해당없음(특수직 연금가입자)	30	10.3
합계	291	100.0

- 1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가입률을 계산해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국민연금 가입률(직장기준) 38.7%, 건강보험 가입률(직장기준) 39.0%임.
-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현재 직장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비율에서 차이를 보임. 규모가 적을수록 현재 직장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낮았고, 반대로 규모가 클수록 가입률이 높았음.

〈표 34〉 사업장 규모별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여부

단위: 수(비율)

	국민연금 직장가입		건강보험 직장가입		고용보험 가입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60 (28.0)	149 (71.3%)	60 (29.3%)	145 (70.7%)	67 (31.8%)	144 (68.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인 미만	21 (35.6%)	38 (64.4%)	22 (37.3%)	37 (62.7%)	22 (36.1%)	39 (63.9%)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10 (62.5%)	6 (37.5%)	10 (62.5%)	6 (37.5%)	10 (62.5%)	6 (37.5%)
합계	91 (100.0%)	193 (100.0)	92 (100.0)	188 (100.0)	99 (100.0)	189 (100.0)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8.225a	2	.016	8.095a	2	.017	6.330a	2	.042
우도비	7.651	2	.022	7.605	2	.022	5.969	2	.051
선형 대 선형결합	6.838	1	.009	7.078	1	.008	4.681	1	.031
유효 케이스 수	284			280			288		



## Chapter 03

.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교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교

## 1) 비정규직 규모

- 수원시에서 소매업과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73.6%가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은 16.4%임.

〈표 3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

단위: 수(비율)

		종사상 지위			
		상용	임시	일용	전체
고용계약	정함	32	46	7	85
	정하지 않음	119	93	16	228
노동시간	36시간 미만(시간제)	86	118	11	215
	36시간 이상(전일제)	71	22	12	105
정규직		52			52(16.4)
비정규직		103	140	23	266(73.6)
전체		155	140	23	318(100.0)

### ※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기준

- 종사상지위(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계약기간 설정 여부, 평균 근로시간을 활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여 살펴봄.
- 상용직 중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1주 36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함.
- 임시직과 일용직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상용직 중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노동자와 1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함.

## 2) 노동조건 비교

### (1) 임금 형태

- 정규직 노동자는 임금형태가 월급제가 54.9%로 일급제와 시급제에 비해 높은데 반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시급제가 78.2%로 일급제 16.9%, 월급제 16.9%에 비해 매우 높음.

• • 2019 판매직 종사 노동자(소매업 · 음식점업) 노동실태

〈표 36〉 고용형태별 임금 형태

단위: 수(비율)

	임금 형태				
	시간급	일급	월급	인센티브제	
정규직	23		28		51
	(45.1)		(54.9)		(100.0)
비정규직	208	11	45	2	266
	(78.2)	(4.1)	(16.9)	(0.8)	(100.0)

(2) 임금 수준과 노동시간

- 정규직 노동자의 1월 평균 임금은 1,930,755원인데 반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1월 평균임금은 876,866원으로 정규직 대비 45.4%임.
-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임. 정규직 노동자의 1주 평균 노동시간이 51.5시간인데 반해, 비정규직 1주 평균 노동시간은 23.39시간으로 정규직 노동자 대비 45.4%로 임금 차이 비율과 정확히 일치함.
- 소매업과 음식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임금수준과 시간단위 임금이 전체적으로 낮고, 단지 노동시간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짐을 알 수 있음.

〈표 37〉 고용형태별 평균 임금 및 노동시간

단위: 원, 시간

		수	평균	표준편차
임금	정규직	52	1,930,755.00	410,270.606
	비정규직	249	876,866.75	578,185.828
노동시간	정규직	52	51.54	10.829
	비정규직	266	23.39	13.456

(3) 휴가

-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법정 · 약정 휴가 대부분을 적게 사용하고 있었음. 연차휴가의 경우 정규직은 23.1%가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9.8%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음. 비정규직은 생리휴가 4.3%, 출산전후휴가 1.1%, 육아휴직 0.8%, 가족돌봄휴직 1.1%, 경조휴가 9.4% 사용률을 보였음.
- 휴가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임.

〈표 38〉 고용형태별 휴가 사용 여부

단위: 수(비율)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경조휴가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정규직	12	40	3	49	3	49	4	48	3	49	12	40
	(23.0)	(76.9)	(5.8)	(94.2)	(5.8)	(94.2)	(7.7)	(92.3)	(5.8)	(94.2)	(23.1)	(76.9)
비정규직	26	240	9	257	2	264	2	264	3	263	25	241
	(9.8)	(90.2)	(3.4)	(96.6)	(0.8)	(99.2)	(0.8)	(99.2)	(1.1)	(98.9)	(9.4)	(90.6)

	유의확률(양측검정)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	경조휴가
Pearson 카이제곱	.007	.007	.008	.001	.024	.005
우도비	.012	.012	.026	.005	.054	.010
선형 대 선형결합	.007	.007				

#### (4) 사회보험

-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직장 기준)은 60%를 상회하는 반면,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5.3%이고, 건강보험 가입률은 26.2%이며, 고용보험 가입률은 27.8%임.
- 현재 직장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해있는지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임.

〈표 39〉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여부

단위: 수(비율)

	국민연금 직장가입		건강보험 직장가입		고용보험 가입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정규직	30	15	31	14	32	13
	(66.7)	(33.3)	(68.9)	(31.1)	(71.1)	(28.9)
비정규직	59	174	60	169	66	171
	(25.3)	(74.7)	(26.2)	(73.8)	(27.8)	(72.2)
합계	89	189	91	183	98	184
	(32.0)	(68.0)	(33.2)	(66.8)	(34.8)	(65.2)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29.621	1	.000	30.897	1	.000	31.218	1	.000
우도비	27.630	1	.000	29.129	1	.000	29.805	1	.000
선형 대 선형결합	29.515	1	.000	30.784	1	.000	31.107	1	.000
유효 케이스 수	278			274			282		



## Chapter 04

.

#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 1) 올해 최저임금 평가

-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해보면, 최저임금이 생활향상에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만 긍정성과 부정성이 비슷(3.03)했고,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3.24)이나 최저임금 준수 여부(4.10)는 긍정적인 답변이 우세했음.

〈표 40〉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단위: 원, 시간

	수	평균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	327	3.24
최저임금이 생활이 미친 영향	327	3.03
최저임금 준수 여부	328	4.10

- 올해 응답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인상' 되었거나 '그 이상으로 인상' 되었다는 응답이 82.8%로 나타나 소매업·음식업 종사 노동자의 임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 영향이 없었거나 최저임금 인상률 이하로 인상되었다는 응답은 각 15.0%, 2.1%에 불과함.
  - 소매업·음식업 종사 노동자들 대부분이 최저임금 영향권 내의 임금을 받아왔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그들의 임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표 41〉 최저임금이 임금에 미친 영향

항목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최저임금 이상 인상	63	19.3	19.3
최저임금만큼 인상	208	63.6	82.9
최저임금 인상 이하 인상	7	2.1	85.0
영향없었음	49	15.0	100.0
합계	327	100.0	

- 임금인상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적게 이루어졌거나 임금 인상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근로시간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0%로 가장 높았음.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별도의 방법을 꾀한 비율이 높지는 않았으나, 그 방법으로는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을 조정할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 2019 판매직 종사 노동자(소매업 · 음식점업) 노동실태

〈표 42〉 임금인상이 없었거나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적은 이유

항목	빈도	비율
원래임금이 높아서	12	24.0
급여항목 조정	7	14.0
휴게시간, 노동시간 조정	16	32.0
기타	15	30.0
합계	50	100.0

- 올해 최저임금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높았다는 응답이 비교적 우세하였음. ‘높았다’거나 ‘매우 높았다’는 응답이 33.1%였는데 반해 ‘낮았다’거나 ‘매우 낮았다’는 응답은 14.7%였음.

〈표 43〉 임금 수준 적정성

항목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매우 낮은 수준	9	2.8	2.8
낮은 수준	39	11.9	14.7
보통	171	52.3	67.0
높은 수준	79	24.2	91.1
매우 높은 수준	29	8.9	100.0
합계	327	100.0	

- 올해 최저임금이 생활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비슷하였음. ‘도움이 되었다’거나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26.6%, ‘도움이 되지 않았다’거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23.8%였음.

〈표 44〉 임금 생활향상 도움 정도

항목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전혀 도움 안됨	19	5.8	5.8
도움 안됨	59	18.0	23.9
보통	162	49.5	73.4
도움 됨	68	20.8	94.2
매우 도움 됨	19	5.8	100.0
합계	327	100.0	

-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고 있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우세하였음. ‘잘 지켜지고 있다’거나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이 70.1%였는데 반해, ‘안 지켜지고 있다’거나 ‘전혀 안 지켜진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음.

〈표 45〉 임금 준수 정도

항목	빈도	비율	누적비율
전혀 안 지켜짐	6	1.8	1.8
안 지켜짐	16	4.9	6.7
보통	76	23.2	29.9
잘 지켜짐	71	21.6	51.5
매우 잘 지켜짐	159	48.5	100.0
합계	328	100.0	

-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이와 같이 응답한 것은 이들의 임금이 명목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인상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년 대비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인상된 노동자가 82.8%임.
- 다만,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상이했는데, 1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리커트 5점 척도에서 4.5점)한 반면, 평균 노동시간이 길수록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리커트 5점 척도에서 3.73점)이 높았음.
- 반면에 노동시간이 길수록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1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의 평가는 리커트 5점 척도에서 4.10이고, 1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평가는 3.73점임.

〈표 46〉 노동시간에 따른 올해 최저임금 평가

단위: 원, 시간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최저임금액 생활 향상 도움 정도	최저임금 준수 정도	합계
1주 15시간 미만 노동	3.17	3.19	4.50	3.6
1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노동	3.29	3.07	4.10	3.5
1주 40시간 이상 노동	3.26	2.82	3.73	3.3
합계	3.24	3.03	4.10	

- 1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기에 시급 8,350원만 받아도 최저임금을 받는 결과가 됨. 하지만,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고, 1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2019 판매직 종사 노동자(소매업·음식점업) 노동실태

〈표 47〉 노동시간별 최저임금 평가

단위: 수(비율)

	최저임금 평가					
	전혀 안 지켜짐	안 지켜짐	보통	잘 지켜짐	매우 잘 지켜짐	합계
1주 15시간 미만 노동	0	1	15	14	64	94
	(0.0)	(1.1)	(16.0)	(14.9)	(68.1)	(100.0)
1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노동	4	3	32	33	63	135
	(3.0)	(2.2)	(23.7)	(24.4)	(46.7)	(100.0)
1주 40시간 이상 노동	2	12	29	24	32	99
	(2.0)	(12.1)	(29.3)	(24.2)	(32.3)	(100.0)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37.472a	8	.000
우도비	37.945	8	.000
선형 대 선형결합	26.905	1	.000
유효 케이스 수	328		

## 2)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 내년 적정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동결’ 과 ‘5~10% 미만’이 각 26.9%와 25.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표 48〉 내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

항목	빈도	비율	누적비율
동결	88	26.9	26.9
5% 미만	64	19.6	46.5
5~10% 미만	83	25.4	71.9
10~15% 미만	26	8.0	79.8
15~20% 미만	35	10.7	90.5
20% 이상	31	9.5	100.0
합계	327	100.0	

- 누적 비율로 살펴보면,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로 5%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5%로 거의 절반에 이룸. ‘10% 미만’ 응답까지 합산한 ‘한 자릿수’ 인상률이 70%를 상회하고, 15% 미만 누적응답률이 79.8%로 전체 응답자의 2/3 이상임. 이에 반해 15% 이상 응답률은 20.2%에 불과함.

-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동결’ 또는 ‘5% 미만’의 의견이 높았던 반면,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5~20% 미만’, ‘20% 이상’의 의견이 많았음.
  - 사업장의 경영상황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 사업장의 규모가 적을수록 사업장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데, 경영사정이 ‘빎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49〉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

단위: 수(비율)

	동결	5%미만	10%미만	15%미만	20%미만	20%이상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75	47	64	17	28	16
	(30.4)	(19.0)	(25.9)	(6.9)	(11.3)	(6.5)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12	13	12	9	5	9
	(20.0)	(21.7)	(20.0)	(15.0)	(8.3)	(15.0)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0	4	6	0	1	5
	(0.0)	(25.0)	(37.5)	(0.0)	(6.3)	(31.3)
합계	87	64	82	26	34	30
	(26.9)	(19.8)	(25.4)	(8.0)	(10.5)	(9.3)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27.024a	10	.003
우도비	28.663	10	.001
선형 대 선형결합	10.009	1	.002
유효 케이스 수	323		



# Chapter 05

.

##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 1) 법정 근로조건 준수 조치 필요

-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소매업·음식점업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법정 근로조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우를 받고 있음.
  - 시급제와 일급제 노동자 중에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는 노동자는 27%에 불과했고, 법정휴가 사용률도 매우 낮으며(연차휴가 36.2%, 생리휴가 13.2%, 출산전후휴가 1.7%, 육아휴직 1.8% 등), 직장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도 30% 정도에 불과함.
  - 특히, 최저임금조차 지급받고 있지 못한 현실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함.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84.1%의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었음.
-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어서 모든 노동자들이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가져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 정부는 소매업 및 음식점업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함.
  - 현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 상황을 엿보면, 신고사건 처리에 빠듯한 실정이어서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1조)인 사업장근로감독,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임.
  - 김근주 외 2인의 연구(「근로감독 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8)에 따르면, 근로감독 제도의 개선방향으로 1) 근로감독의 위상과 인식제고, 2) 근로감독과 확충과 교육체계 확립, 3) 전문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4) 현장중심·사전지원형 근로감독 활동 지원을 제시하고 있음.
  - 이 중 현장중심·사전지원형 근로감독 활동 지원을 위해 근로감독관의 충원과 현장지원형 근로감독관과 내근형 근로감독관으로 조직을 분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조직분리와 같은 특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봄.
-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
  - 노동과 관련된 사무, 특히 근로감독은 국가사무임. ILO 협약에서도 “근로감독은 중앙기관의

감독과 관리 아래 행해진다”(제81호 협약 제4조, 제129호 협약 제7조)고 하고 있어 중앙정부 직할의 원칙을 정하고 있음.

- 다만, 이것이 근로감독이 중앙정부에 독점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실제 노르웨이에서는 지방정부에 설치된 노동보호위원회가 감독행정업무가 중앙정부로 넘어간 이후에도 존속하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지방정부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고 함. (한국노동연구원, 「선진국 근로감독 운영실태조사」, 2008)
- 고용노동부 지방기관인 각 고용노동지청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근로감독 업무 중 사업장 노무관리지도(근로기준법 등 교육 등)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2) 영세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

-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에서 알 수 있듯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급격히 향상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에 대해 노동자들의 절반 정도가 5% 미만이라 응답하였고, 사업장의 규모가 적을수록 그러한 응답의 비중이 더 컸음.
- 정부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도(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에 기여하였듯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임.
- 앞서 조사에서 소매업·음식점업 현장 노동자들 대부분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기본급 외에 복리후생수당을 받고 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본 조사에서 별도의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으나 임금 외의 복리후생수당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노사정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복지지원제도를 만들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대기업 노사가 이에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사회통합형 복지’ 제도의 설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이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법정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예: 휴가대체 인력 파견 공공일자리사업)하는 사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들 지원하는 세밀한 정책들을 개발해야 할 것임.

# 2019년 소매업 종사 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는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수원시에 소재한 소매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솔직한 의견은 수원시 일자리·노동정책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끝까지 설문조사에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설문조사는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집합적인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지금 직장에서 귀하의 근로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지금 직장의 1일 평균 종사자수는 몇 명입니까?(사장님 제외)

-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99명      ⑤ 100~299명      ⑥ 300명 이상

## 2. 지금 직장은 언제부터 다니셨습니까?

□□□□년 □□월

## 3. 지금 직장에서 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근로자      ③ 일용근로자

## 4. 지금 직장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였습니까?

- ① 정하였음      ② 정하지 않았음

↳ 4-1. 고용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6개월 미만      ③ 6개월~1년 미만      ④ 1년      ⑤ 1년 초과~2년      ⑥ 2년 초과

## 5. 지금 직장에서 1주 평균 몇 시간 일하고 있습니까?(휴게시간 제외) 총 □□□□ 시간

## 6. 지금 직장 외에 다른 직장에서도 일하고 있습니까?

- ① 일하고 있음      ② 일하고 있지 않음

↳ 6-1. 다른 직장에서도 1주 평균 몇 시간 일하고 있습니까? 총 □□□□ 시간

## 7.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를 원합니까?

- ①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②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음  
③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직장)으로 바꾸고 싶음  
④ 계속 그대로 일하고 있음



**다음은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14.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작년('18년) 시급 7,530원에서 금년('19년) 8,350원으로 시간당 820원 10.9%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귀하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 ① 최저임금 인상 이상으로 인상되었다.
- ② 최저임금 인상만큼 인상되었다.
- ③ 최저임금 인상 이하로 인상되었다.
- ④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

→ 14-1.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적게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원래 임금이 금년도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 ② 급여항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추어 조정하였기 때문에
- ③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근로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 ④ 기타( )

15. 올해(2019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수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의 질문들에 답변해주세요.

구분	시급	일 환산액	월 환산액
		(8시간 기준)	주40시간 기준
올해(2019년) 최저임금액	8,350원	66,800원	1,745,150원

15-1. 올해 최저임금액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은수준 ① ② ③ ④ ⑤ 매우 높은수준

15-2. 귀하의 생활 향상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습니까?

전혀 도움안됨 ① ② ③ ④ ⑤ 매우 도움이됨

15-3. 최저임금이 지금 직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안지켜짐 ① ② ③ ④ ⑤ 매우 잘지켜짐

16. 내년(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률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동결
- ② 5% 미만(8,768원/시 미만)
- ③ 5~10% 미만(8,769원/시~9,185원/시 미만)
- ④ 10~15% 미만(9,186원/시~9,603원/시 미만)
- ⑤ 15~20% 미만(9,604원~10,020원 미만)
- ⑥ 20% 이상(10,030원 이상)

**다음은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7. 성별

- ① 남
- ②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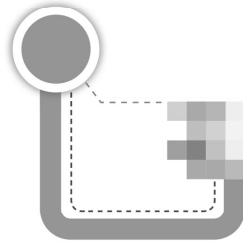
18. 학력

- ① 고졸 이하
- ② 대학(전문대포함) 재학
- ③ 대학(전문대포함) 졸업 이상

19. 연령대(만나이로)

- ① 20세 미만
- ② 20세~30세 미만
- ③ 30~40세 미만
- ④ 40~50세 미만
- ⑤ 50~60세 미만
- ⑥ 60세 이상





## 2019 판매직 종사 노동자(소매업·음식점업) 노동실태

- 과제수행 / 2019년 04월~06월
- 발 행 / 2019년 06월
- 인 쇄 / 2019년 06월
- 발 행 인 / 이희원
- 발 행 처 /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59
- 전화번호 / 031-548-1888
- 팩 스 / 031-548-1889

---

본 책자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